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진로설계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22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현황	6
2.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각종 센터 등 설치 입법례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재 병무청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시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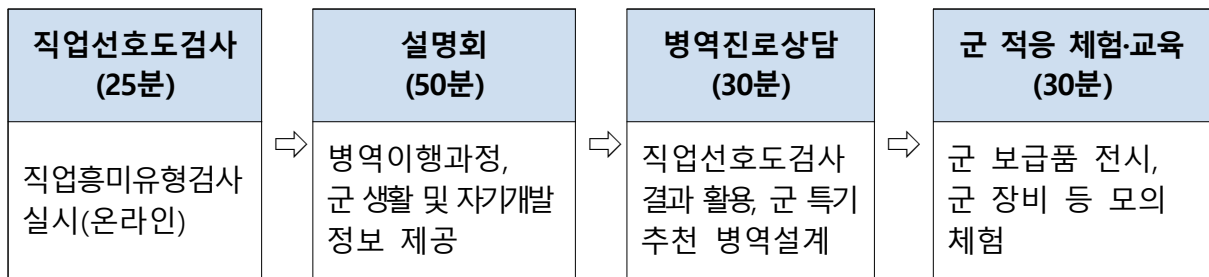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의 지원)</u> ① <u>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재 병무청이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학업·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 이행 전 전문 상담 등을 통하여 전공·경력 등을 고려한 군 특기를 추천하고, 병역 이행 후 군 경력과 사회 진로 간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 지원 정책임.

□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병역진로설계센터 운영프로그램¹⁾ 현황>



□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²⁾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지역, 경기지역 등에 총 11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³⁾를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1) 지방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2) 2018년 찾아가는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 2020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

3) <참고자료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현황 참고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인원 및 만족도 현황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서비스 인원(명)	1,615	4,693	16,310	32,287	48,734
만족도 현황(%)	90.3	93.1	94.1	94.2	94.4

□ 개정안은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예산 확보,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용이 등 병무청이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정부 의견을 일부 반영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⁵⁾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⁶⁾에 따라 제대군인 관련한 사무는 국가보훈부 소관이며, 개정안의 ‘병역의무 이행 후’라 함은

4)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센터 등의 설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다수 존재함.(참고자료2 참조)

6)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역 이후로 볼 수 있어 병무청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⁷⁾

또한,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실제 수행 주체(지방병무청장)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수정의견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의 지원) ① 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의 지원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준비 및 ----- ----- -----.

문 의 처
02)6788-5307

7) 「병역법」에는 복직보장, 채용 시 우대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제74조, 제74조의2)이 이미 존재함.

※ 참고자료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현황⁸⁾

(’24. 7. 31. 기준)

센터명	설치연도	관할구역
서울센터	2020년	서울시
대구센터	2021년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센터	2021년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전센터	2021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센터	2022년	부산시
춘천센터	2022년	강원도
수원센터	2023년	경기남부
인천센터	2023년	인천시
울산센터	2024년	울산시
창원센터	2024년	경상남도
의정부센터	2024년	경기북부

8) 2024년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개소하였고, 2025년 청주·전주센터 설치 추진 중으로 전국 13개 센터 운영이 목표임.(병무청 설명)

2.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각종 센터 등 설치 입법례

▲「검역법」 제12조의2 “질병관리청장은 ~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 <u>해외감염병신고센터</u>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기상법」 제17조의4 “기상청장은 ~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 <u>국가기상센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상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 등을 위하여 <u>건강가정지원센터</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소방청장은 ~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 <u>119구급상황관리센터</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여성가족부장관 ~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u>긴급전화센터</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용노동부장관등은 ~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u>고용정보센터</u>를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